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행보: 대통령 행정조치로 본 새로운 대외 전략

February 3, 2025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40개가 넘는 대통령의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2월 1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등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6건, 각서(Memorandum) 12건, 선언(Proclamation) 4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발표된 이번 행정조치는 국가 안보 강화, 에너지 정책 전환, 제조업 부활, 환경 규제 완화 등 그의 핵심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단순한 “관세” 분야를 넘어서서 경제, 외교, 무역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몇 개월 또는 몇 년 안에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표한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對 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과 행정명령¹

(1) 주요 내용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발동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tariffs-on-imports-from-canada-mexico-and-china/>

-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 (단,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10% 관세 적용)
-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
- 상기 관세는 2025년 2월 4일(미국 시각)부터 발효

이 조치는 불법 이민 및 마약 밀수(특히 펜타닐 문제) 대응을 명목상 이유로 내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미국 제조업 보호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영향 및 대응방안

이번 행정명령은 북미 및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 및 캐나다, 멕시코,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이 한국 등 제3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강화하거나, 가격/물량공세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조치가 한국 시장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주의깊게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²

(1)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은 특히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을 포함한 친환경 기술 관련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환경 규제를 철폐하며,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관련 정책을 대폭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에 따라 배정된 연방 예산의 집행이 즉각적으로 중단되고 관련 기관들은 90일 이내에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협의해 자금 집행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구축과 관련된 연방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련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기차 의무화 정책의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의무화(electric vehicle mandate)"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습

²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american-energy/>

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적극 장려하고, 소비자들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30D Credit)를 제공하는 등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특정 기술을 인위적으로 우대하는 불공정한 보조금"이라고 평가하며 철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차 세액 공제(30D Credit) 폐지 가능성**

전기차 세액 공제(30D credit)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IRA의 핵심 내용으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및 다른 기술에 비해 전기 자동차를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 초래한 시장 왜곡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30D Credit을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입법 절차 등을 통하여 폐지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휘발유 차량 판매 제한 규정 폐지**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휘발유 차량 판매를 사실상 제한하는 기능을 해왔던 주(州)³ 배출 허가 면제 제도를 적절하게 종료하고, 전기차 우대 조치를 통해 차량 구매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종단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차 및 배터리 산업을 주요 전략 시장으로 삼아 온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정이 요구됩니다.

2)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의 종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을 철회하며, 이에 따른 주요 연방 자금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IRA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에서 승인된 자금의 집행을 중단하는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정립할 에너지 정책을 공식화하는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Formula Program) 및 충전 및 연료 공급 인프라에 대한 재량적 보조금 프로그램(Charging and Fueling Infrastructure Discretionary Grant Program)에 배정된 전기차

3 캘리포니아 등 6개주에서 2025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2024년 11월 발표한바 있음. (관련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20/trump-executive-order-electric-vehicles>)

충전소 관련 자금 집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모든 기관은 IRA 및 IIJA에 따라 배정된 모든 자금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관련 기관이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및 관리예산실에 자금 집행 중단의 결과와 개선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명령의 최종적인 실행 방향과 관련 법령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린 뉴딜 관련 정책이 연방 차원에서 상당 부분 철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영향 및 대응방안

미국 내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온 우리 기업들은 관련 정책 변화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의 폭을 다변화하고 시나리오 별로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배터리 생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보조금 및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전략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⁴

(1) 주요 내용

이 각서는 미국 경제, 노동자, 및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 및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각서는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반덤핑/보조금 규정 적용 강화, FTA 및 WTO 협정 재검토와 같은 무역 정책을 넘어서서 기존의 수출통제 제도, 대외투자 규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 등 경제안보정책 분야도 주요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2025년 4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세 정책 및 무역 조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1) 다양한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검토

▶ 수출 통제 시스템 개편 검토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은 수출 통제 권한을 가진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美 수출 통제 시스템을 전면 검토해야 하며, 전략적 경쟁국 및 지정학적 라이벌과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수출 통제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특히,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확보·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경쟁국 및 그 대리국가(proxy)로의 기술 및 제품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허점(loopholes)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집행 정책 및 무역·국가안보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 해외 투자 규제 검토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투자심사제도를 도입한 2023년 8월 9일자 행정명령 제14105호의 개정 또는 폐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명령에 근거하여 2024년 11월 15일 발표된 최종 규칙의 적절성 평가를 수행하여, 이 제도에 국가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통제 수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무장관은 아웃바운드 투자 안보 프로그램(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권고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 커넥티드 차량 및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거래 규제 검토

상무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사무국(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ervices)을 통해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s)에 대한 규제 제정(rulemaking)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권고 해야 합니다. 또한, ICTS 거래 관련 기존 규제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커넥티드 제품(connected products)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무부와 재무부, 무역대표부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우선, 상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미국의 연간 상품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을 조사하고, 무역 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예를 들어 글로벌 추가 관세(Global Supplemental Tariff)와 같은 추가적인 관세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검토는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관점에서 무역 적자 문제를 재조명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미국 무역 정책의 중심이었던 무역대표부가 자문 역할로 축소되고, 상무부가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무역 정책의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무역 적자 문제에 더욱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의 적용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상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검토 대상에는 초국경 보조금(transnational subsidies), 비용 조정(cost adjustments), 제로잉(zeroing)⁵ 등과 같은 세부적인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 제로잉의 경우, 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여러 차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재도입할 경우 국제 무역 분쟁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FTA 및 WTO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협정을 재검토하여,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대표부는 기존 무역 협정이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reciprocal and mutually advantageous concessions)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이 양자 또는 특정 산업 분야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미국 노동자, 농부, 목축업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업의 수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USMCA로 개정하고, 한미 FTA를 재협상한 바 있으며, 이번 검토를 통해 한미 FTA를 포함한 기존 무역 협정 전반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대응하는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ERS”)의 설립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RS는 관세, 수입세, 및 기타 외국 무역 관련 수익을 징수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으로, 기존의 세금/관세 징수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 것입니다.

ERS가 설립되면 기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는 차이가 있는 세입 관리 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내 무역 세수 구조를 재편하고, 보다 체계적인 세액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⁵ 참고로, 제로잉은 상무부가 반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의 덤핑 마진을 무시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6) 對 중국 대응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정책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는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역대표부는 2024년 5월 14일 발표된 “제301조 조사 조치의 4년간 평가”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정책과 행위를 평가하고, 산업 공급망 및 제3국을 통한 우회 관행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추정하고 추가적인 관세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각서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이하 “PNTR”) 관련 입법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각서는 1월 23일 미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PNTR 철회 관련 초당적 입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이전부터 무역대표부 대표가 PNTR 철회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만큼 향후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PNTR이 철회될 경우, 대중 추가 관세 체계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7)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조정 조치 검토

경제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은 상무부 장관, 무역대표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각종 수입 조정 조치의 효과를 검토 및 평가하고, 이 검토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검토는 19 U.S. Code § 1862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입품에 대한 제외 (exclusions), 면제(exemptions), 기타 수입 조정 조치(other import adjustment measures)의 유효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조치가 실제로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변경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 향후 보고 절차

이상의 검토와 조사가 완료되면,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관리예산실 등 관련 부처는 2025년 4월 1일 또는 4월 30일까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포함한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의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무역 정책 방향은 이번 대통령 각서를 기반으로 각 담당 기관의 검토 절차 및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개발 성공 등 전략적 산업분야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대중국 견제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 규제 및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미국의 대중국 무역 조치가 한국 시장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의 철저한 분석**

-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내 가격 공세 및 우회 수출 가능성 검토
- 미국 내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 탐색

▶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성 예측 및 대응책 마련**

- 미국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관세 및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모니터링
-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 개정 가능성 대비

▶ **산업별 영향 분석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 배터리,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관련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 가능성 고려
- 미국 및 기타 제3국 내 생산 거점 확보 및 중국 의존도 점진적 감소 전략 검토

향후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 및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무역 규제 및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규제 리스크 대응팀은 최근 글로벌 경제 · 무역 · 안보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규제 · 정책 변화 및 각 기업의 공급망 ·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및 전문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이용우** | 변호사 T. 02-316-4007 E. ywlee@shinkim.com
- **박효민** | 변호사 T. 02-316-4252 E. hmipark@shinkim.com
- **헬렌박**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선영** (Sunny Kim) | 외국변호사 T. 02-316-4655 E. syokim@shinkim.com
- **김영주** | 변호사 T. 02-316-4320 E. yjukim@shinkim.com
- **윤강현** | 고문 T. 02-316-4322 E. khyun@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